

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

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,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순화 등) 광명시 조례의 본문, 별표, 별지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용어의 순화 등(제2조 관련)

□ 어려운 한자어

연번	부서명	자치법규명	조·항· 호·목	조문내용	현행	개정
1	예산법무과	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	제2조제5항 제4호가목	제2조(위촉 및 해촉)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 4.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. 불변기일 <u>도과</u>	도과	지남
2	도로과	광명시 건축물관리 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	제2조제5호	제2조(정의) 5. “제설·제빙작업”이라 함은 보도, 도로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,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 를 <u>미연에</u>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 하는 작업을 말한다.	미연에	미리
3	안전총괄과	광명시 지진피해 시 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	제2조제3호	제2조(정의) 3. “위험도평가단원”(이하 “평가단원”라 한다)은 <u>학·사</u> <u>계</u> 및 관련 학·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광명 시지역본부장”라 한다)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	학·사계	학계, 해당 분야

4	교육청소년과	광명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·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3 조제 2 항	제 3 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<u>하오</u> 7시부터 다음날 <u>상오</u> 6시까지로 하되,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. 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	하오 상오	오후, 오전
5	도시교통과	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	제 5 조제 1 항 제 3 호	제 5 조(경비지원 등)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3. <u>사기 양양을</u> 위한 연찬회,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	사기 양양을	사기를 드높이기
6	총무과	광명시 포상 조례	제 5 조제 3 호	제 5 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3. <u>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</u> 솔선수범한 경우	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	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

□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

연번	부서명	자치법규명	조·항·호·목	조문본문	현행	개정
1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9 조 및 <u>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	제 21 조에 따라
2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2 조제 1 항	제 2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5 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<u>규정에 의거</u>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.	규정에 의거	규정에 따라
3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2 조제 2 항	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<u>규정에 의거</u> 선임한다.	규정에 의거	규정에 따라

4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2 조 제 3 항	③ 제 1 항 제 2 호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광명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	제 1 항 제 2 호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	제 1 항 제 2 호에 따라
5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3 조 제 1 항 제 2 호	제 3 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2. 법 제 8 조 제 12 항 후단의 <u>규정에 의한</u> 승인	규정에 의한	규정에 따른
6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3 조 제 1 항 제 4 호	4. <u>기타</u>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	기타	그 밖의
7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4 조 제 1 항	제 4 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<u>1 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1 차에 한하여	한 번만
8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4 조 제 2 항	② 광명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1 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	규정에 불구하고	규정에도 불구하고
9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4 조 제 3 항	③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<u>규정에 의한</u>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<u>규정에 의한</u>	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
10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 제 2 항 제 1 호	1. 법 제 8 조 제 7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조사의뢰 및 법 제 8 조 제 12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조사 의뢰의 승인	제 8 조 제 7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	제 8 조 제 7 항에 따른
11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 제 2 항 제 1 호	1. 법 제 8 조 제 7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조사의뢰 및 법 제 8 조 제 12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조사 의뢰의 승인	제 8 조 제 12 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	제 8 조 제 12 항에 따른
12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 제 2 항 제 2 호	2. 법 제 8 조의 2 의 <u>규정에 의한</u> 조치	제 8 조의 2 의 <u>규정에 의한</u>	제 8 조의 2 에 따른

13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 제 2 항 제 3 호	3.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	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	제 22 조에 따른
14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제 3 항	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	사항에 관하여는	사항에 관하여
15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제 4 항	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 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	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	제 3 항에 따라
16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6 조제 4 항	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 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	계산에 있어서	계산을 할 때
17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8 조	제 8 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위원에 대하여는	위원에게는
18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8 조	제 8 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에 의하여	에 따라
19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제 9 조	제 9 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20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,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에 의한	에 따라
21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제 10 조제 3 항	제 10 조(회의)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위원에 대하여는	위원에게는

22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제 11 조제 2 호	제 11 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2. 위원이 6월 이상 <u>치료를 필요로 하는</u>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	치료를 필요로 하는	치료가 필요한
23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제 13 조제 2 항	제 13 조(우수기업 선정) ② <u>제 1 항에 의한</u>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 1 항에 의한	제 1 항에 따른
24	감사담당관	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제 15 조제 2 항	제 15 조(환경조성사업 선정) ② <u>제 1 항에 의한</u>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 1 항에 의한	제 1 항에 따른
25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<u>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</u>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	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26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7 조제 2 항	제 7 조(인권교육)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<u>등에 대하여</u> 연 1 회 3 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	등에 대하여	등에게
27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7 조제 2 항	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<u>등에 대하여</u> 연 1 회 3 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<u>사업장에 대하여도</u>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	사업장에 대하여도	사업장에 대해서도
28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8 조제 2 항	제 8 조(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)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<u>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</u>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	또는 단체에 필요한

29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12 조제 2 항	제 12 조(위원회의 기능)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<u>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u>	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	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30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16 조제 3 항	제 16 조(위원회 의견청취) ③ 제 2 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<u>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</u>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	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31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20 조의 2 제 4 항	제 20 조의 2(사건의 조사 등) ④ 옹호관은 인권상담·조사 업무 등에 있어 신속·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, 비상임 옹호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임 옹호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.	조사업무 등에 있어 신속·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	조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신속·공정하여야 하며
32	감사담당관	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제 22 조	제 22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33	정책기획과	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<u>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	제안제도 운영에
34	정책기획과	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	제 6 조	제 6 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<u>제작함에 있어서</u>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·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	제작함에 있어서	제작하는 경우

35	정책기획과	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	제 14 조제 2 항	제 14 조(심사기준 등) ② 제 1 항제 2 호 중 <u>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</u>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(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)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	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	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
36	자치분권과	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제 5 조제 4 항	제 5 조(협의회 구성 등)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<u>1 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1 회에 한하여	한 번만
37	자치분권과	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제 6 조	제 6 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</u> 심의한다.	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	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38	자치분권과	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제 10 조	제 10 조(수당 등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<u>전문가 및 관계인</u> 등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	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
39	자치분권과	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	제 11 조제 1 항	제 11 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u>지원단체에 대하여</u>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	지원단체에 대하여	지원단체에
40	자치분권과	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	제 23 조제 2 항	② 주민자치회는 제 5 조의 업무를 <u>수행하는데 있어</u>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수행하는데 있어	수행할 때
41	자치분권과	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6 조제 3 항	제 16 조(보조금 등 지원) ③ 시장은 범죄예방과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<u>단체에 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단체에 대하여는	단체에

42	자치분권과	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7 조	제 17 조(수당 등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 14 조에 의거 출석한 <u>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</u>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	관계전문가 등에 게
43	자치분권과	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	제 6 조제 2 항	제 6 조(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) ② 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<u>유도함으로써</u>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.	유도함으로써	유도하여
44	자치분권과	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	제 20 조제 2 항	제 20 조(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·운영) ② 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<u>단체에 대하여</u>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단체에 대하여	단체에
45	자치분권과	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헌정 운영 조례	제 11 조	제 11 조(포상 및 우대)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<u>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</u> 포상하거나,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.	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	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
46	자치분권과	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헌정 운영 조례	별표	1. 우리는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<u>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</u>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.	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	고객에게 불이익을
47	자치분권과	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광명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<u>지원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	지원에 관하여	지원에
48	자치분권과	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 2 조제 1 항	제 2 조(정의) ① “자치분권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<u>배분함으로써</u>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광명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	배분함으로써	배분하여

49	자치분권과	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 12 조제 4 항	제 12 조(협의회의 운영) ④ 그 밖에 <u>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50	자치분권과	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 23 조	제 23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51	자치분권과	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제 16 조	제 16 조(포상)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<u>등에 대하여</u> 포상할 수 있다.	등에 대하여	등에
52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3 조	제 3 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<u>위원회에 대하여</u> 적용한다.	위원회에 대하여	위원회에
53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5 조제 1 항	제 5 조(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)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<u>사무에 대하여는</u>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사무에 대하여는	사무는
54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8 조제 1 항 제 2 호	제 8 조(위원의 해촉) 2. 위원이 <u>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</u> 질병 또는 6 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	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	장기치료가 필요한
55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9 조제 1 호	제 19 조(실비보상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1.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<u>위원에 대하여</u>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	위원에 대하여	위원에게
56	자치분권과	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20 조	제 20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57	총무과	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	제 7 조 2 항	제 7 조(장학금의 지급)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<u>사유가 없는 한</u>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	사유가 없는 한	사유가 없으면

58	토지정보과	광명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 례	제 2 조 5 항	제 2 조(구성) ⑤ 위원회는 심의 전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~7 명 이내로 <u>구성, 운용</u> 할 수 있다.	구성, 운용	구성하여 운용
59	토지정보과	광명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 례	제 3 조의 2 제 2 호	제 3 조의 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2.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<u>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</u> 질 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	장기치료를 필요 로 하는	장기 치료가 필 요한
60	토지정보과	광명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 례	제 10 조	제 10 조(수당과 여비)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에</u> 대하 <u>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위원에 대하여는	위원에게는
61	토지정보과	광명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 례	제 12 조	제 12 조(회의의 비공표)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 원장의 허가없이 공표하여서는 <u>아니된다</u> .	아니된다.	아니 된다.
62	일자리창출과	광명시 경력단절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<u>경제활동 촉 진을 도모함으로써</u>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	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
63	일자리창출과	광명시 노사민정협 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 조	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 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64	일자리창출과	광명시 무인동력비 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 성 및 <u>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</u>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	경쟁력을 강화함 으로써	경쟁력을 강화하 여

65	일자리창출과	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·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<u>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</u>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	생활임금을 지급하여
66	문화관광과	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5 조제 4 항	제 5 조(운영과 위탁) ④ 동굴의 <u>민간위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민간위탁에 관하여	민간위탁에
67	노인복지과	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8 조제 3 항	제 8 조(수탁자의 선정) ③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를 <u>선정함에 있어</u>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선정함에 있어	선정할 때
68	노인복지과	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5 조제 2 항제 4 호	제 15 조(사용료 등의 감면) 4. 관내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. 단, 매장증명서를 <u>제출한 자에 한하며</u> ,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	제출한 자에 한하며	제출한 자로 한정하며
69	노인복지과	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7 조제 1 항	제 17 조(위탁협약의 해지) ① 이로 인한 수탁자의 <u>손해에 대하여는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손해에 대하여는	손해는
70	노인복지과	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별표) 위수탁협약서 제 17 조	제 17 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한 <u>조항에 한하여</u> 당해 사건·사고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.	조항에 한하여	조항에 한정하여
71	노인복지과	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	제 2 조	제 2 조(비용의 보조 등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<u>광명시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에 대하여</u>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광명시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에 대하여	광명시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에

72	노인복지과	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 례	제 5 조제 2 항	제 5 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 ② 제 1 항에 따 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<u>조건에 관하여</u> 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 한다.	조건에 관하여는	조건은
73	노인복지과	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 례	제 6 조제 1 항	제 6 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<u>사무에 관하여</u>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	사무에 관하여	사무를
74	노인복지과	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·미용권 지원 조례	제 9 조	제 9 조(환수처리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(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제 7 조에 따른 <u>정산요금에 대하여</u>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정산요금에 대하 여	정산요금을
75	복지정책과	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	제 7 조제 2 항	② 제 1 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.	규정에 불구하고	규정에도 불구하 고
76	복지정책과	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	제 9 조제 2 항	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<u>수익금을</u> <u>복지관운영비에</u> 충당하여야 한다.	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	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로
77	복지정책과	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	제 13 조	제 13 조(시행규칙)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78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의료급여기 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	제 5 조	제 5 조(준용)이 <u>조례에</u>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.	조례에	조례에서
79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	제 6 조제 1 항	제 6 조(대상자 선정) ① 시장은 제 3 조에 따른 <u>지원대상 자 선정에 있어</u>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 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 만원 이하인 세대 를 매년 1 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 통보하여 매월 지원하도록 하며, 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전에 매월(분기별) 통보한다.	지원대상자 선정 에 있어	지원대상자를 선 정하는 경우

80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	제 6 조제 1 항	제 6 조(대상자 선정) ① 시장은 제 3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 만원 이하인 세대를 매년 1 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 통보하여 매월 지원하도록 하며, <u>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</u> 지급일 전에 매월(분기별) 통보한다.	추가 발생자에 대하여는	추가 발생자에게는
81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82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5 조제 1 항	제 5 조(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) 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<u>사람에 대하여는</u>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사람에 대하여는	사람에게
83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5 조제 1 항	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<u>장애인에 대하여는</u>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장애인에 대하여는	장애인에게는
84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8 조제 3 항	제 8 조(수탁자 선정) ③ 시장은 수탁자를 <u>선정함에 있어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	선정함에 있어	선정할 때
85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9 조제 1 항	제 9 조(위·수탁 협약) ①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, 시장과 법인은 위·수탁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.	수탁에 관하여 필요한	수탁에 필요한
86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1 조제 7 호	제 11 조(수탁자의 의무) 7. 수탁자는 <u>운영에 있어서</u> 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이 조례 및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	운영에 있어서	운영할 때

87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2 조제 1 항	제 12 조(위탁협약 해지) ① 이로 인한 수탁자의 <u>손해에 대하여는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손해에 대하여는	손해는
88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4 조제 1 항	제 14 조(손해배상)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<u>손해에 대하여는</u>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	손해에 대하여는 이를	손해를
89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19 조제 3 항 제 7 호	제 19 조(구성 등) 7. 기타 <u>시설운영에 관하여</u>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시설운영에 관하 여	시설운영에
90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22 조제 2 호	제 22 조(위원의 해촉) 2. 위원이 장기간 <u>치료를 필요로</u> <u>하는</u> 질병 또는 6 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	치료를 필요로 하는	치료가 필요한
91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23 조	제 23 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<u>등에 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등에 대하여는	등에게는
92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28 조	제 28 조(퇴소조건)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에 대하여</u> 퇴소를 명할 수 있다.	사람에 대하여	사람에게
93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31 조제 1 항	제 31 조(고용대상 장애인) ① 다만, 비장애인 채용은 전 체 고용인원의 10 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<u>경우에 한하여</u>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 다.	경우에 한하여	경우에만
94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 35 조	제 3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
95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활동보조서비스 등 <u>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</u>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	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
96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	제 3 조제 1 항	제 3 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에 <u>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</u> <u>로써</u>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.	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	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
97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	제 16 조제 3 항	제 16 조(활동지원급여 신청)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<u>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</u> 센터 등 장애인활동 지원 제공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.	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	선정된 장애인에 게
98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일차 리 창출 지원 조례	제 4 조제 4 항	제 4 조(추진계획) ④ 제 3 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<u>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</u> 이에 응하여야 한다.	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99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휠체 어 등 수리 지원 조 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이하 “휠체어 등”이라 한다)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<u>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지원시책을 추진 함으로써 장애인 의 이동편의와	지원시책을 추진 하여 장애인 이 동편의와
100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휠체 어 등 수리 지원 조 례	제 2 조	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정의는	뜻은
101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휠체 어 등 수리 지원 조 례	제 5 조제 2 항 제 1 호	제 5 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<u>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</u> 전액을 지원하되,	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	사람에게는 수리 비용의
102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장애인 휠체 어 등 수리 지원 조례	제 7 조	제 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03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 례	제 9 조	제 9 조(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
104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7 조제 5 항	제 7 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⑤ 제 4 항에 따라 대여금 관리업무의 <u>대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	대행에 관하여	대행에
105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18 조의 3 제 1 항	제 18 조의 3(상환기한 연장)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1 회에 한하여</u> 최대 1 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1 회에 한하여	한 번만
106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18 조의 3 제 2 항	제 18 조의 3(상환기한 연장) ② 상환의무자가 제 1 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<u>연장을 필요로 하는</u>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 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연장을 필요로 하는	연장이 필요한
107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18 조의 4 제 1 항	제 18 조의 4(사회보험료 지원) ① 시장은 제 15 조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·사업 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<u>가구에 한하여</u> 지원할 수 있다.	가구에 한하여	가구에만
108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23 조제 5 항	제 23 조(기금의 지원) ⑤ 용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<u>자에 대하여는</u>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.	자에 대하여는	자에게는
109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27 조의 2 제 1 항	제 27 조의 2(상환기한 연장)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1 회에 한하여</u> 최대 1 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1 회에 한하여	한 번만
110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27 조의 2 제 2 항	제 27 조의 2(상환기한 연장) ② 상환의무자가 제 1 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<u>연장을 필요로 하는</u>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 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연장을 필요로 하는	연장이 필요한

111	장애인복지과	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28 조제 3 항	제 28 조(관계규정의 준수)(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<u>회수에 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회수에 대하여	회수에
112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4 조	제 4 조(기금의 귀속절차) 법 제 82 조제 5 항 및 제 83 조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 37 조제 4 항에 따른 기금의 <u>귀속에 관하여</u>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	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	귀속에 관한 절차는
113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6 조제 4 항	제 6 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<u>지출에 관하여</u> 는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지출에 관하여는	지출은
114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12 조	제 12 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법 제 47 조 및 영 제 21 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<u>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</u> 자로 한다.	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	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
115	위생과	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 17 조	제 1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16	위생과	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	제 16 조	제 16 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<u>등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등에 관하여	등에
117	위생과	광명시 음식판매자 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	제 2 조	제 2 조(영업장소와 첨부서류) 별표 15의 2 제 10 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휴게음식점영업 등”이라 한다)을 <u>하려는 경우에</u>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하려는 경우에	하려는 경우
118	위생과	광명시 음식판매자 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	제 3 조	제 3 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다만,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 경우에</u> 시장은 영업장소, 영업기간,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.	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영업장소	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영업장소

119	하수과	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	제 5 조제 2 항	제 5 조(조직) ② 제 1 항의 경우 시장은 <u>특별한 사유가 없</u> <u>는 한</u>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.	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120	하수과	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21	하수과	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제 14 조	제 14 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회의 및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122	하수과	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제 16 조	제 16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 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23	하수과	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	제 29 조	제 29 조(납부기한)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 시작일 부터 30 일간으로 하며 납부기한의 연기 및 <u>분할납부에 관하여</u> <u>는</u> 「국세징수법」 제 15 조부터 제 20 조까지를 따른다.	분할납부에 관하 여는	분할납부는
124	하수과	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	제 23 조제 2 항	② 제 1 항의 <u>경우에 있어서</u>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(은행납인 경우에는 50 일 이내)에 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.	경우에 있어서	경우에
125	하수과	광명시 소하천 점용 료등 부과·징수 조 례	제 6 조제 2 항	제 6 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 ② 그 채취기간이 6 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 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	규정에 불구하고	규정에도 불구하 고
126	공원녹지과	광명시 캠핑장 관리 ·운영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광명시 캠핑장 관리·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운영에 관하여	운영에
127	공원녹지과	광명시 캠핑장 관리 ·운영 조례	별표 4 캠핑장 사용수칙 11 번	0 <u>위급을 필요로 하는</u> 경우와 호우·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	위급을 필요로 하는	위급한

128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25 조의 <u>규정에 의거</u>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25 조의 규정 에 의거	제 25 조에 따라
129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25 조의 <u>규정에 의거</u>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<u>징수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징수에 관하여	징수에
130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2 조제 1 항	제 2 조(진료비)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<u>약가</u> 를 말한다.	약가를	약품 가격을
131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5 조	제 5 조(타 법령에 의한 수가)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<u>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/u>	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.
132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7 조제 2 항	제 7 조(수수료)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) <u>등을 요하는 경우에는</u> 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	등을 요하는 경 우에는	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
133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7 조제 2 항	제 7 조(수수료)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)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정의 <u>진료수가를 가산한다.</u>	진료수가를 가산 한다.	진료수가를 더한 다.
134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10 조	제 10 조(납부)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, <u>익일</u> 시금고에 납입한다. 다만, 카드결제금액 납입은 월 1 회이상으로 한다.	익일	다음 날
135	보건행정과	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	제 12 조	제 12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시행에 관하여	시행에
136	보건행정과	광명시 건강생활실 천협의회 및 지역보 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	제 5 조	제 5 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<u>1 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1 회에 한하여	한 차례만

137	보건행정과	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	제 9 조	제 9 조(협의·심의·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·심의·조정한 <u>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</u>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	사항을 최대한
138	보건행정과	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	제 11 조	제 11 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에 대하여는</u>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위원에 대하여는	위원에게는
139	건강생활과	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	제 8 조	제 8 조(포상)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<u>단체에 대하여</u> 포상할 수 있다.	단체에 대하여	단체에
140	보건행정과	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	제 5 조제 1 항	제 5 조(지원액 및 지원절차)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<u>기관에 대하여</u>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기관에 대하여	기관에
141	보건행정과	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	제 5 조제 2 항	제 5 조(지원액 및 지원절차) ② 의료비 지급기준, 금액 및 <u>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</u>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	지원절차 등은
142	보건행정과	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	제 6 조제 3 항	제 6 조(지원사업) ③ 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<u>단체 등에 대하여</u>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단체 등에 대하여	단체 등에
143	보건행정과	광명시 모자보건 조례	제 7 조	제 7 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<u>등에 대하여</u>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등에 대하여	등에
144	보건행정과	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	제 8 조	제 8 조(포상)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<u>개인에 대하여</u> 포상할 수 있다.	개인에 대하여	개인에게

145	보건행정과	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	제 7 조	제 7 조(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)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<u>개인에 대하여</u>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개인에 대하여	개인에게
146	보건행정과	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	제 16 조제 1 항	제 16 조(수당 및 지원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 <u>전문가 등에 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전문가 등에 대하여는	전문가 등에게는
147	건강생활과	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 4 조제 1 항 제 2 호	제 4 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2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	기타	그 밖에
148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1 조제 5 호	제 11 조(수탁자의 의무) 5.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<u>제반사고</u>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.	제반사고	각종 사고
149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6 조제 3 호	제 16 조(보고 및 승인) 3. 운영과 관련된 <u>제 규정의</u>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	제 규정의	모든 규정의
150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9 조제 1 항	제 19 조(회계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<u>개시</u> 90 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개시	시작
151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별표 제 5 조제 1 항	제 5 조(사업계획서 등) ① “수탁자”는 매 회계연도 <u>개시</u> 90 일 전까지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개시	시작

152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별표 제 7 조제 2 항	제 7 조(수탁자의 의무) ② “수탁자”는 원활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의 인력·시설·예산 관련 등 <u>제 반</u> 사항에 대하여 “센터장”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제 반	모든
153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별표 제 8 조	제 8 조(운영규정) ①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(개정을 포함한다) 이를 <u>비치하여야</u> 한다.	비치하여야	갖추어 놓아야
154	건강생활과	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별표 제 9 조제 1 항	제 9 조(사무편람) ① “수탁자”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<u>작성·비치하여야</u> 한다.	작성·비치하여야	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
155	건강생활과	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	제 10 조	제 10 조(평가) 시장은 금연사업의 <u>제반활동을</u>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.	제반활동을	모든 활동을
156	건강생활과	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	제 9 조제 1 항	제 9 조(응급의료의 홍보 등)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<u>인식제고</u>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인식제고	인식 향상
157	건강생활과	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	제 6 조	제 6 조(응급장비의 관리) 응급장비 관리서류를 <u>작성 비치하여</u>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	작성 비치하여	작성하여 갖추어 놓고
158	건강생활과	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9 조제 5 호	제 9 조(수탁자의 의무) 5.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<u>제반사고</u>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.	제반사고	각종 사고

159	건강생활과	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4 조제 3 호	제 14 조(승인 및 보고) 3. 운영과 관련된 <u>제 규정</u> 의 제정과 개정, 폐지의 경우	제 규정의	모든 규정의
160	건강생활과	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15 조	제 15 조(평가기준)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,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<u>감안하여</u> 평가하되,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	감안하여	고려하여
161	건강생활과	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22 조제 2 호	제 22 조(이용료 감면) 2. 다른 <u>법령에 의거</u>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	법령에 의거	법령에
162	건강생활과	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 24 조제 1 항	제 24 조(회계 및 결산)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<u>개시</u>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	개시	시작
163	보건행정과	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	별표 제 2 호	2. 위반행위의 횟수 산입에 따른 과태료의 상황부과기준은 <u>당해</u> 위반행위가 있는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의 기간으로 한다.	당해	해당
164	건강생활과	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의 <u>규정에 의거</u> 「의료법」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규정에 의거	규정에 따라
165	건강생활과	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	제 6 조	제 6 조(업무대행경비)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<u>소요되는</u>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	소요되는	필요한
166	건강생활과	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	제 9 조제 1 항	제 9 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<u>기타</u>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기타	그 밖의

167	건강생활과	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	제 9 조제 2 항	제 9 조(업무의 위탁) ② 시장은 제 1 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<u>규정하지 아니한 사항</u> 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	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168	기후에너지과	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	제 10 조제 4 항	제 10 조(재정 지원 등)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<u>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</u> 「광명시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	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	개인 또는 단체에
169	기후에너지과	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	제 16 조제 5 항	제 16 조(위원의 위촉 해제·제척·기피 등) ⑤ 위원에게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17 조의 <u>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</u> 이를 제외한다.	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	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해당안건에서만
170	기후에너지과	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	제 1 조	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<u>정함으로써</u>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정함으로써	정하여
171	기후에너지과	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	제 5 조	제 5 조(적용) 이 <u>조례에 정하지 아니한</u>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조례에 정하지 아니한	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
172	건설지원사업소	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	제 12 조 제 4 항	제 12 조(소위원회) ④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2 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.	규정에 불구하고	규정에도 불구하고